

[공고번호 : 울산-성장사다리-03-1.(Post-BI기업 지원)]

본 공고는 2023년 울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내 개별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별공고이며, 세부내용은 2023년도 울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와 동일합니다.

2023년도 울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3차 공고 < Post-BI기업 지원 >

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6월 2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울산광역시장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- (지원목표) 잠재성 있는 Post-BI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, 사업화 성공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안착을 지원
-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이내(VAT 제외), 30개사 내외
 -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 필수
- 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) 성장컨설팅·기업역량혁신지원(사업화촉진형/시장중심형) 프로그램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
 - 전담PM 매칭 및 기업진단 포함

구분	지원대상	지원금(VAT 제외)	지원목표	지원금 한도
사업화지원	성장컨설팅지원	· 사업화 전략 및 Business Model 도출	5개사 내외	5,000천원
	기업역량혁신지원 (사업화촉진형)	· 시제품제작, 인증획득, 특허획득, 제품고급화	5개사 내외	7,000천원
	기업역량혁신지원 (시장중심형)	· 마케팅, 전시회 참가, 디자인		
	패키지지원	· 성장컨설팅지원(필수) + 기업역량혁신지원(택1)	20개사 내외	12,000천원

* 사업화 패키지 지원 세부 프로그램 : 지원금 한도 내 자유롭게 선택(1개 이상)

지원 프로그램		지원내용
성장컨설팅지원	BM 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목적) 사업진단을 통해 사업 모델 검토 및 보강 (지원내용) 국내외 산업/기술동향 데이터 분석조사결과 제공, 사업화전략 및 비즈니스모델 도출 보고서 제공
기업역량혁신지원 (사업화촉진형)	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(2D,3D모델링 및 제품디자인), 시험/분석, 제작, 시금형, 가공 등을 지원 (* 양산금형, 단순 원재료 구입 지원제외)
	인증 획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,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,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(* ISO인증 등 제외, 제품관련 인증만 지원 가능)
	특허 획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, 디자인출원,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(* 특허등록 제외)
	제품 고급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망상품의 생산 공정개선, 품질·기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
기업역량혁신지원 (시장중심형)	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목적) 우수 유망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외판로 개척, 마케팅 전략 수립, 기업설명회, 시장조사 및 리서치 등 마케팅을 지원 (지원내용) 홍보, 마케팅 전략 수립, 수출상담회·기업설명회 운영, B2B 구축 등 (* 단순홈페이지제작, 시장개척단 제외)
	전시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목적) 유망상품의 온·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지원 (지원내용) 부스임차료, 장치비, 운송비, 통역비, 보비(홍보물 제작 등) (*항공료, 체제비, 관세 제외)
	디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목적)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 역량 강화 (지원내용) 브랜드 개발,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, 디자인컨설팅, 디자인 제작 장비 지원 등

○ (신청자격) 접수마감일 기준 ① ~ ③ 모두 충족

구 분	세부기준
① 소재지	울산지역 내 본사, 주사업장 또는 부설연구소 소재 창업 3~7년 중소기업(본사, 공장, 지사) *(우대) 창업보육센터(BI)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
② 업종	울산지역 주축산업 및 전·후방 연관 업종 기업 (울산지역 주축산업 : 전기자동차부품, 가스연료선박기자재, 기능성화학소재)
③ 매출액	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

○ (신청제외대상)

제외대상	세부내용
채무불이행	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·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은 예외로 함)
부실위험	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기업 (단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) 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기자본) ×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미반영' 또는 '부정적'
기타 사항	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지원사업 선정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 포함) ⑩ 중견기업,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외 기업 ⑪ 연체료 체납 기업(단, 접수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 기업 제외)

2 신청방법

- **(공고기간)** 2023. 7. 24.(월) ~ 8. 18.(금) 18:00
- **(접수기간)** 2023. 7. 24.(월) ~ 8. 18.(금) 18:00
- **(신청방법)**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
- **(접수 및 문의)**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거점지원실 노은진 연구원
(전화번호 : 052-219-8648 / 이메일 : shdms2001@utp.or.kr)
- **(제출서류)** 신청서 및 증빙서류 목록

연번	제출서류	● : 필수 제출 ◎ : 해당 시 제출
1	사업신청서 한글파일	●
2	사업신청서 직인날인본	●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신청서 서식 內 포함)	●
4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(대표자, 담당자 각 1부) (신청서 서식 內 포함)	●
5	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(신청서 서식 內 포함)	●
6	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(신청서 서식 內 포함)	●
7	중소기업확인서 *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) 발급본	●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●
9	사업자등록증	●
10	법인등기부등본	◎
11	공장등록증	◎
12	울산 주축산업 업종 및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매출증빙 *(세금계산서 등, 1건 이상 제출)	●
13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현재 기준)	●
14	2020년 ~ 2022년(3년)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2020년 ~ 2022년 재무제표 *(국세청 홈텍스 발급) ② 2022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*(국세청 발급분)	●
15	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*(KOITA 발급분)	◎
16	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	◎
17	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	◎

※ ● : 필수 제출, ◎ : 해당 시 제출

※ **상기 2번 ~ 17번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체를 1개 파일로 스캔(항목별 개별 스캔 x)**

※ 스캔본(pdf)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, 컬러 스캔 필수

※ 신청서 상의 데이터는 제출서류(증빙)상의 데이터와 필히 일치하여야 함

3 평가방법 및 기준

- **(평가방법)**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및 예비진단 → 서류평가 → 발표평가 ※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
- **(평가기준)**

지원대상	지표(배점)
Post-BI기업	지원자격(15), 사업계획(30), 기업역량(15),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(40)

- **(우대가점)** 아래 항목 해당 시, 우대가점 반영 (최대 3점)

연번	우대가점 기준	증빙서류	가점
1	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&D 종료기업	결과평가(통보)공문	3
2	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	인증서	1
3	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	인증서	1
4	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	인증서 (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)	1
5	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"주의심각"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	TP 확인	2
6	지역 내 공급기관(업) 컨소시엄 가점 1점 *공급기관(업)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	사업자등록증	1

4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,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
- 선정결과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
-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,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
- 과제종료 후,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
 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)

5 기타 지원제외 대상

- 지원기간 중,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
-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

6 관련 법령
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
 -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